

199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I.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7억 9,455만 1천원으로 그중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탁수수료 외 9건에 17억 6,435만 6천원이 지출되고 3,019만 5천원은 불용액임.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사유
세항	세세항	사업명				
일반회계(10건)			1,794,551	1,764,356	30,195	
본 청(8건)			1,765,551	1,735,358	30,193	
1214 법무관리	130 경상적경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위탁수수료	5,500	5,500		'93 1. 3 발생한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피해자들이 충청북도지사를 상 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및 상고심에 응소하기 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위탁수수료
1261 공무원 교육원 사무관리	240 자체사업	공무원교육원 수해복구	19,652	18,875	777	'97. 7. 17 집중호우시 절개지 산사태로 파손된 공무원교육원 대강당 수해복구비
2431 지역개발	240 자체사업	위험교량개축	150,000	150,000		괴산청안부흥3리(분저울)소교량('78년 가 설)으로 교각침하, 난간파손,철근노출등 붕괴위험성이 있어 긴급개축
3113 농산관리	240 자체사업	벼병충해긴급 방제	256,550	256,550		벼 병충해방제 총동원령(8.5) 및 이삭도 열병발생경보 발령에 따라 피해가 우려 되어 긴급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3321 도로건설	240 자체사업	도로부지관련 부당이득반환	34,849	32,503	2,346	국가지원지방도 제82호선인 만승~생극 간 도로편입용지 점유사용(2필지 605m ²) 에 따른 소유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반환금
3322 재해대책	240 자체사업	재해위험하천 보수	800,000	797,558	2,442	장마대비 수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 지구하천 10개소에 대한 사전정비
		재해위험수리 시설보강	280,000	280,000		장마대비 수해가 우려되는 수리시설물 2 개소(보1, 소류지1)에 대한 사전정비보강
		수해복구실시 설계용역	214,000	190,578	23,422	'97. 8. 3 ~8. 5 도내일원의 집중호우로 하천 및 도로피해에 대한 복구공사의 조 속한 발주로 명년도 우기이전에 조기완 공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단위 : 천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 비 비 지 출 사 유
세 항	세세항	사업명				
3332 도로관리 사업소 운영	130 경상적경비	지방도수로 원 퇴직금	5,000	3,794	1,206	지방도수로원퇴직(15명)에 따른 부족분
증평출장소(2진)			29,000	28,998	2	
1214 법무관리	130 경상적경비	손해배상청구 소송배상금	20,000	20,000		'95. 2. 9 증평출장소 취수장주변 잡초소 각종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인근 묘목발 소실사건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를 상 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판결 배상금 지급
3113 농산관리	240 자체사업	벼병충해긴급 방제	9,000	8,998	2	벼 병충해방제 총동원령(8.5) 및 이삭도 열병발생경보 발령에 따라 피해가 우려 되어 긴급공동방제농약대 지원

II.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1997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600만원으로 그중 가경 2,3 지구 미분양용지 감정평가수수료 2,436만원이 지출되고 164만원은 불용액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지출사유
세 항	세세항	목				
110 재고자산	111 용지조성 사업비	가경2,3지구 미분양용지 감정평가	26,000	24,360	1,640	청주가경2,3지구미분양용지(33필지 36,272m')분양을 위한 재감정평가 수수료

Ⅲ. 검토의견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세출 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예산은 세입·세출의 건적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생겨나기 마련인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제도가 있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에 의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6~8월에 집중 지출되었고, 재해대책 예산의 일부는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액 22억 6,000만 원에 비해 12.8%에 불과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2억 6,813만 6천원을 지출한 사례와 공무원교육원 수해복구는 '97년도 재해 발생에 의한 시설복구 당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을 계상했어야 함에도 '98당초예산과 추경에 계속 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1억원이상의 예비비는 선승인을 받아 사용케 하는 것이 행정선례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의회입시회가 있었음에도 보고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집행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특별회계>

청주 가경 23지구 미분양용지 관련 분양을 위한 재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상 택지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공급가격을 재사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견이 없음.